

# 방화관리 규정

□ 제정 : 1998. 05. 21

□ 개정 : 2017. 05. 01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에서의 방화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 예방과 화재로부터 각종 재해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전 교직원 및 교내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3조(조직)** ① 총장은 본교의 방화관리에 관한 총 책임자가 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건물별, 실별 소방안전책임자(이하 “소방안전책임자” 라 한다)를 두어 이를 지휘·통솔한다.

② 총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임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책임자는 시설물의 사용책임자로 한다.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6조(소방안전책임자의 업무)** 소방안전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용건물 내의 화재예방 및 화기단속 확인
2. 사용 건물 내의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보조

**제7조(당직근무자의 임무)** 당직근무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책임자로부터 인계한 단속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을 지며, 근무 중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호원(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 외부의 침입 또는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

람을 말한다)을 지휘·감독한다.

**제8조(자위소방대의 편성)** ① 화재 및 각종 재해예방을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조직하고 본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으로 하여금 편성, 운영한다.

② 자위소방대는 지휘통제반, 비상연락반, 초기소화반, 방호안전반, 응급구조반, 피난유도반으로 구성한다.

**제9조(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 지휘·운영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지휘통제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4. 비상연락반은 대장과 지휘통제반의 지휘를 받아 통보·연락을 실시한다.
5. 초기소화반은 대장과 지휘통제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6. 응급구조반은 대장과 지휘통제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응급처치한다.
7. 피난유도반은 대장과 지휘통제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 제3장 예방관리 활동

**제10조(교육 및 훈련)** ① 본교의 교직원은 자체에서 실시하는 소방교육 및 훈련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② 정기교육은 연 2회로 하고,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교육할 수 있다.

③ 화재 예방상 교육 및 훈련에 전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외부로부터 초빙하여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관서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훈련종별, 훈련개요, 참가인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방안전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소방훈련 검토)** 소방안전관리자는 각종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후 그 내용면에서 시정을 요하는 특이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이를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점검 등)**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본교의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②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은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외관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③ 자체점검의 횟수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정밀점검은 연 1회 실시하며, 그 시기는 1월부터 6월 사이에 실시한다.
2.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실시하며, 그 시기는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

는 달에 실시한다.

3. 외관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자체점검의 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정밀점검은 실시 후 30일 이내에 점검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2. 작동기능점검은 실시 후 30일 이내에 점검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3. 외관점검은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한다.

⑤ 소방안전관리자는 각종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사항에 의거하여 불비·결함사항에 대하여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한다.

**제13조(재해예방 조치)** 재해예방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안전관리자는 재해에 관한 사전조치를 위한 각종 시설 및 기구(이하 “재해방지시설”이라 한다)를 정비·유지 관리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의 도괴·침수 방지 및 피난통로 등의 피난장해 방지 그리고 소방설비 또는 소방활동상 필요한 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나. 화기사용 설비·기구 등의 전도·낙하 방지 및 자동소화 장치, 연료의 자동정지 장치 등의 안전성 확보

다. 재해 시 필요한 인력, 기재, 식량 등의 비축 및 민방공사의 소화, 피난 유도 등 태세의 정비

2. 소방안전관리자는 비상경보 해지 후에 즉시 소방설비 등 재해 발생시 사용한 설비기구의 점검 및 응급조치를 행한다.

**제14조(재해방지 시설의 정비·유지 관리)** 재해방지시설은 제11조의 의한 점검과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제15조(기타)** ① 위험물 취급장소 및 화기 취급소 등은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위험물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용접, 그 밖의 화기 등의 작업계획을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2. 화기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소화기 등을 비치한다

3.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 모닥불 등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4. 소방안전관리는 공사담당자가 책임을 진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경우 방화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임시로 화기를 사용할 때

2. 건축물 및 각종 설비기구를 설치 또는 변경할 때

④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물의 관련 설계도면 등을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1998년 5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